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
2026. 10. 26.(월) 10:00 제3차 본회의

# 2025회계연도
#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
# 지출 승인의 건

# 심 사 보 고 서

## 세종특별자치시의회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–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–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안 번호 | 5097 |
|---|---|

2026년 10월 7일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심사대상

-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6. 9. 18.

나. 제 출 자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6. 10. 6.

라. 상정일자 :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

○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6. 10. 7.)

- 인사 및 제안설명 청취(인사: 부교육감, 제안설명: 행정국장)
- 전문위원 검토보고
- 교육청 소관 질의답변
- 원안가결

3. 제안설명 요지 (행정국장 이미자) : 생략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(전문위원 박대종) : 별첨1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〔별첨목록〕

별첨1 : 전문위원 검토보고

**별첨 1** **전문위원 검토보고서**

# 1 예비비 지출

## 1 예비비 규모 및 결산

○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,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임

○ '25회계연도 예비비는 당초예산 12억 94백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6억 28백만원을 증액하고,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3억 51백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액은 5억 70백만원임

○ 이 중 일반예비비에서 78백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, 이는 최종예산액의 13.7%에 해당하고, 예비비 집행잔액은 4억 92백만원으로 최종예산액의 86.3%임

○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되어 사용 실적은 없음

**< '25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결산 >**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원가통계목명 | 당초예산 (A) | 추가경정예산 | | 최종예산 (D=A+B+C) | 사용결정액 | | 집행잔액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제1회 (B) | 제2회 (c) | | 금액 (E) | 비율 (E/D) | 금액 (F=D-E) | 비율 (F/D) |
| **합계** | **1,294** | **1,628** | **△2,351** | **570** | **78** | **13.7** | **492** | **86.3** |
| 일반예비비 | 994 | 1,628 | △2,051 | 570 | 78 | 13.7 | 492 | 86.3 |
|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| 300 | - | △300 | - | - | 0.0 | - | 0.0 |

## 2 예비비 사용 세부 현황

○ 예비비 사용액은 78백만원으로,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5년 10월 14일 사용을 결정하였으며, 사용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

**< 예비비 사용 세부 현황 >**

(단위 : 백만원)

| 소관 | 세부사업 | 목 | 사용결정액 (A) | 지출액 (B) | 다음연도 이월액 (C) | 집행잔액 (A-B-C) | 사용결정 승인일자 | 예비비 지출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유초등교육과 | 특수교육복지 | 보전금 | 78 | 78 | 0 | 0 | 2025.10.14. |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예비비 사용 |

**【 검토 의견 】**

-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,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거나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 수요에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
- 특히, 인건비 등 일정 부분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,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부족액 발생 사유와 시기,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 예비비를 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